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9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 안민석・양정숙・임오경

박성준 · 김승원 · 송갑석

김민기 • 유정주 • 전용기

이원택 · 조오섭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시·도체육회는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등의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행·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통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고자함. 또한,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 함으로써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2조, 제33조 등).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2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생활체육"을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2. 해당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8.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 ④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 ⑥ 지방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⑦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조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방체육회가 아닌 자는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4조제1항 중 "수탁사업자"를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수탁사업자"로 한다.
-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42조를"을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대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 제3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통합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통합체육회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국가대표선수"란 <u>통합체</u>	4의2 <u>대한체</u>
<u>육회</u> , 대한장애인체육회 또	육회
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	
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	
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	
한 사람을 말한다.	<u>.</u>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9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	
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u>통합체육</u>	가 <u>대한체육</u>
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	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	<u>단, 시·도체육회 및 시·군·</u>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
	회"라 한다), 시·도장애

나. ~ 아. (생 략)

10. (생략)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 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 적으로 설립되고 <u>통합체육회</u> 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 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 12. (생략)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 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 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 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 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u>협의회</u>의 조직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체육회 및 시・군・구장
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
애인체육회"라 한다)
나. ~ 아.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대한체육회
· 11의2. ~ 1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
세3도(시구세포신등립구최) ①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② <u>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u>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통</u>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 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u>통합체육회</u>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비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 1. ~ 9. (생 략)
 - 10.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
승)	
②	- <u>대</u>
한체육회	
③기방처]육
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신	<u></u> 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	_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_ , .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u>한</u>

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 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 영·지원

- 11. · 12. (생략) ② ~ ④ (생략)
- 제33조(통합체육회) ① 체육 진흥 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1. ~ 6. (생 략) ② ~ ⑧ (생 략) <u><신 설></u>

	<u>지방체육회, 지방장애</u>
	인체육회, 생활체육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33조(대한체육회) ①
	대한체육회
	•

- 1. ~ 6.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
-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 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 육회를 설립한다.
 -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

 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2. 해당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 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8.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운영
-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 다.
-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 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 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 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 여 사용한다.

- ④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 ⑤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 ⑥ 지방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 여야 한다.
- ⑦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u> </u>
<u>대한체육회</u>

<신 설>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 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 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5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2조를 위반한 자

(2	지방:	체육	회가	아닌	자는	제
<u>.</u>	332	조의27	세3호	항에	따른	명칭	또
	는	이와	비	슷한	명칭	을 사용	능하
-	기	못한I	<u> </u>				
제4	442	조(보	լ.	검사	등) (1	
						<u>ス</u>] 방
	체-	육회,	기	방장·	매인체	육회,	<u>수</u>
-	탁/	사업지					
-							
(2	(현행	과	같음))		
제!	552	조(과 터	개료) (1	• 2	(현형	경과
	같	음)					
(3						
	1.	제422	<u> 존제</u>	1항	또는	제2항-	<u>을</u> _
	_			_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